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6
----------	-----

발의년월일 : 2008년 5 월 일
발 의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항 정비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 개정
 - 당 초 : 비공개
 - 변 경 : 1년 경과 후 열람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조항 삭제

3.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4. 1 ~ 4. 21)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광역시 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로, “구도시계획조례” 를 “조례”로 하고, “운영” 을 “시행”으로 한다.

제2장 중 “미관지구내에서의” 를 “미관지구 안에서”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미관지구안에서의” 를 “미관지구 안에서”로 하고, 본문 중 “광역시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 를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로 하며, “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를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하고, “(투시형 담장이나 1.3미터 미만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 를 “(투시형 담장이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미관지구내의 5층이상의 건축물” 을 “5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건물의 전면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되도록 이면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 를 “미관도로(미관지구와 접한 주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지하주차진입로”를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하고, 가목, 나목,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립할”을 “건축물을 건립할”로,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 형태는”을 “2미터 이상 후퇴부분의 바닥은”으로 하며,

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 지하주차진입로는”을 “미관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는”으로 하며,

다. “20미터 이상 도로에”를 “미관도로에”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중 “미관지구내에서의 대지의 고저차”를 “대지의 고저차”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미관지구내에서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로 한다.

같은 조 제8호 중 “미관지구의 건물 전면에는”을 “미관도로에서는 건축물의”로 한다.

같은 조 제9호 중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1호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호 중 “제3조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으로 하고, “사용승인검사 대행건축사가”를 “사용승인 검사자 또는 사용승인검사 대행자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촉 및 직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영 제11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광역시 조례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미관지구 관련 사항

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도로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 을 “8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다만,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심의 사항은”을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으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분과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7707호, 2005. 12. 7> 제3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광역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로—————</p> <p>시행에—————.</p>
<p>제2조 (생략)</p> <p>제2장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p> <p>제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광역시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 건축물 · 담장 · 대문 · 건물조경 · 옹벽 · 광고물 · 기타 시설물의 구조 · 형태 · 색채 · 및 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 2.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2장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p> <p>제3조(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p> <p>—————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2.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다. <u>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 보행자 도로를 기준으로 1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다. <u>미관도로에</u> ----- ----- ----- -----.</p>
<p>6. <u>미관지구내에서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양옹벽이나 자연석 쌓기와 같은 자연친화형으로 하여야 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담쟁이 등 넝쿨류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담쟁이 넝쿨 식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6. <u>대지의 고저차</u>----- ----- ----- ----- ----- -----.</p>
<p>7. <u>미관지구내에서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상가의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시형 셔터가 영업의 성격상 보안이나 미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7. <u>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u>----- ----- ----- -----.</p>
<p>8. <u>미관지구의 건물 전면에는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u></p>	<p>8. <u>미관도로에서는 건축물의</u>----- ----- -----.</p>
<p>9. <u>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주거전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돌출형의 광고물 부착대를 건축물 구조체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u></p>	<p>9. <u>건축물</u>----- ----- -----.</p>

현 행	개 정 안
<p>10. 미관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하고시를 준용 하되 신규(교체포함)로 설치하는 간판의 크기는 창문과 창문사이 벽 높이와 자기 업소 내에서 벽 길이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고(간판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 1미터까 지와 간판의 길이가 자기 업소 범위 내에서 5 미터 미만인 경우 5미터까지 설치가능) 2층 이 상의 창문에 설치하는 문자나 전화번호 선팅광 고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삭 제></p>
<p>11. 미관지구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로미 관을 위하여 이동식 진열대나 상품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1. 건축선----- ----- -----.</p>
<p>12. 제3조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 건축 물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사용승인검사 대 행건축사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 사용승인 검사자 또는 사용승인검사 대행자가----- -----.</p>
<p>제4조(생략)</p> <p>제3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5조(기능)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3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 행	개 정 안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하는 사항
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삭 제>
〈신 설〉	<p>제5조의2(해촉 및 직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운영) (생략)	<삭 제>
제7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제1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p>1. 제1분과위원회</p> <p>가. 영 제11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p> <p>나. 광역시 조례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미관지구 관련 사항</p> <p>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도로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p>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외에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p>2. 제2분과위원회</p> <p>가. 범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p> <p>나. 범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p> <p>다. 범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p>②----- 8인</p> <p>이상 13인 이하의 위원-----</p> <p>-----.</p>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③ -----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심의 사항 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 ----- -----.
<u><신 설></u>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 기와 같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법 제114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분과위원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분 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위원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u>제4장 과태료 징수절차</u>	<u><삭 제></u>
제12조부터 ~ 제16조까지 (생 략)	<u><삭 제></u>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생 략)	<u><삭 제></u>

관 계 법령 발 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제1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19>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생략)

- ② 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③ 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5. 7(수)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8. 5. 8(목)
- 라. 위원회 상정 : 2008. 5. 16(금)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항 정비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
 - 당초 : 비공개
 - 변경 : 1년경과 후 열람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조항 삭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종진)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지방도 시계획위원회 규정과 같은 법 제144조의 과태료 규정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조의 조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5조의 각 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나열한 것으로 제5조의 (“위하여” 를 “위한” 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를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로)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5.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수 정 가 결 사 항

개정안	수정안
<p>제3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u>위하여</u> 울산광역시 중구 <u>도시계획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3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u>위한</u> 울산광역시 중구 <u>도시계획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